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20.12.16.

담당부서 : 법인사무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꽃동네현도학원(이하 “법인”) 정관 제54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이하 “대학교”), 꽃동네학교(이하 “특수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이하 “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5,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 제24조의6 내지 제26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이하 “교육부령”)에 근거를 두며,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하 ‘교원’에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교원 등과 특수학교의 기간제교원을 포함하지 않는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본 정관과 사립학교법 및 기타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 ⑤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⑥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누우치게 한다.
- ⑦이 규정에서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4조(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징계위원회는 6인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법인에 둔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은 해당 학교 교원(대학교의 경우 보직 교원으로 하고, 특수학교의 경우 교장, 교감을 포함 한다)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4인과 법령에 따른 외부위원 2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외부위원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촉된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④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⑤ 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교 교원은 보직기간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의 경우 재직기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충하여야 한다. 다만, 본 규정 제10조제3항에 의한 임시 위원의 임명은 예외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사장이 행하고 당해 징계절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인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법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③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2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제척사유) 징계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본 규정 제9조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의결의 요구의 절차와 방법) ① 임용권자는 교원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이 충분히 사전 조사한 징계자료 및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원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제청으로 교원의 임용권자인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

제12조(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석을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별지 제4호 서식**)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사실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별지 제5호 서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정관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징계처분결정서(**별지 제7호 서식**)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징계기준) ① 대통령령 제25조의2(징계기준)에 의거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정관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별지 제8호 징계기준, 제9호 음주운전 징계기준, 제10호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대통령령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징계의 가중)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별지 제11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히 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지 제11호의 문책 정도의 순위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징계의 감경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3. 법 제66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우
 5.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8. 소속 기관 내의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9.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며 **별지 제12호**와 같다.
-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원이 교육부령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9조(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②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공적 및 정상 등을 참작하여 불문으로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한다.

제20조(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임용권자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징계절차의 중지) ① 조사 및 수사 사실의 통보

1.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6조의 3 제1항)

② 진행 중지

1.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법 제66조의3 제2항)

2.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66조의 3 제3항)

③ 수사 개시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보

1. 교원의 임용권자(징계의결요구자)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 2)

제23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법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소청심사 청구 및 결정)

① **소청심사의 청구**(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1.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 결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다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 **불복소송 제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1.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 (재징계 의결 요구)

① **재징계의결 요구의 기한**

1.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② **재징계의결 요구의 요건**

1. 아래의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과다

◦ 다만, 징계양정 과다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징계시 징계관할 등**

1. 재징계시 징계 관할은 징계 등 혐의자가 현재 소속한 기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재징계에 따른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은 재징계 절차에 의한 징계처분일로부터 발생하며, 이때 징계처분일자를 최초 징계처분일로 소급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과태료)

① **과태료 부과 사유**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74조제1항)

1. 사립학교 교원이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법 제54조 제3항 후단)

2. 사립학교의 장이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법 54조의2 제1항 후단)

3.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를 받고도,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지 않거나, 재심의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의2 제3항 후단)

제27조(비밀누설의 금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29조(운영세칙)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서식 등) 이 규정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징계기준, 징계의 절차는 별지와 같다.

1. 교원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2. 징계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3. 징계사유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
4. 출석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5. 참고(관계)인 출석요구서 [별지 제5호 서식]
6. 교원징계의결서 [별지 제6호 서식]
7. 교원징계처분결정서 [별지 제7호 서식]
8. 징계기준 [별지 제8호]
9.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지 제9호]
10.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별지 제10호]
11.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 [별지 제11호]
12. 징계감경의 세부적인 기준 [별지 제12호]
13. 징계의 절차 [별지 제13호]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고(관계)인 출석요구서

학꽃현 징계위 제 호 <h2 style="margin: 0;">참고(관계)인 출석요구서</h2>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석사유						
사립학교법 제65조 제2항에 의거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 합니다. 년 월 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학꽃현 징위 제 호 <h2 style="margin: 0;">교 원 징 계 의 결 서</h2>			
징계협의를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8호] 징계기준

징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사. 연구부정행위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아.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자. 소속 기관 내의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차.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타. 부정청탁	파면	해임-정직	정직-감봉	견책	견책
파.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정직	정직-감봉	견책	견책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비고 제6호에 따름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
다. 성매매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마.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사.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강등-정직
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차.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카.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신고자 신상정보의 유출, 신고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파.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	감봉-견책
하. 음주운전	비고 제7호에 따름			
거.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비고				
1. 제1호사목에서 "연구부정행위"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자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차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말한다.				
3. 제1호카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4. 제1호타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5. 제1호파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한다.				
6. 비위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2를 준용한다.				
6의2.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7.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3을 준용한다.				

[별지 제9호]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정직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별지 제10호]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학생·학부모 등 직무관련자, 직무와 관련된 다른 교원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교원 또는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임-정직	파면-해임-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했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정직	파면-해임-정직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파면-해임-정직	파면-해임	파면	
<p>비고: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별지 제11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 (제17조제1항 관련)

업무의 성질		업무 관련도	비위 행위자 (담당자)	직근 상급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학교 운영에 관한 결정사항	중요 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단순·반복 업무	중요 사항		1	2	3	4
	경미한 사항		1	2	3	-
단독 행위			1	2	-	-

비고: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별지 제12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 (제18조제4항 관련)

대통령령 제25조의2제1항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대통령령 제2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경되는 징계
파면	해임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징계의 절차

○ 징계 절차의 요약

